

부천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5년 10월 4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5년 10월 6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22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(2005. 10. 13) 상정
- 제122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(2005. 10. 13) 수정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문화예술과장 김 종 대)

가. 제안이유

- 부천시에서 지원하는 모든 축제에 대한 행사 규모와 내용 등에 대한 사전협의 및 사후 평가 등을 통하여 각 축제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부천시축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축제는 개최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띠며, 행사의 명칭에 축전·문화제·예술제 및 제(祭) 등 축제적 의미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로 정함.(안 제2조)
- 축제위원회는 각종 축제의 내용 및 개최 수의 조정, 발전에 관한 사항, 축제의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.(안 제3조)
-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.(안 제4조)

-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5조)
-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7조)
- 위원은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임무수행이 어려울 때, 그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 할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9조)
- 위원회에서는 각 축제의 사업계획서 심의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정함.(안 10조)
- 위원회에서는 필요시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11조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본 조례의 기능에 관하여 설명하여 주기 바람. ○ 축제에 대한 지원과 평가 등을 위해서 위원회 구성에 시민들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기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을 보여 지는데? ○ 축제에 대한 홍보 및 여론 수집 등을 위하여 언론 및 방송 관계인들의 위원 위촉 방안은?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축제에 대한 규모와 내용 등에 관하여 사전 협의 및 사후 평가로 한 단계 더 발전된 축제를 추진하는 것이 그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음. ○ 기존 2분의 의원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하고자 하였으나 지원과 평가의 측면을 고려 할 때 의회의 기능 강화가 바람직 한 것으로 보여 짐. ○ 조례 제정 이후 관련 규정 등의 참여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겠음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- 본 조례 제정안은 그동안 부천시 축제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축제 T/F 팀을 구성하여 연찬회와 심포지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최적의 안을 마련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안으로 찬성 의견을 제시함, 다만 축제에 따른 예산의 지원과 시민들을 대표하여 축제를 평가 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시민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시의회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위원참여 인원을 기존 2인에서 3인으로 수정의결함을 동의함.

나. 반대토론

- 없음

5. 심사결과

- 수정의결

6. 소수의견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

부천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제441호
의결 년월일	2005. 10. 13 (제122회)

제안년월일 : 2005. 10. 13.

제안자 : 기획재정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축제에 따른 예산의 지원과 시민들을 대표하여 축제를 평가 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시민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시의회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위원참여 인원을 기존 2인에서 3인으로 수정.

2. 주요골자

- 위원은 문화예술업무담당국장, 부천문화원장,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,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음악감독, PiFan집행위원장, PISAF조직위원장, 부천만화정보센터 상임이사, 복사골예술제대회장, 부천시의회의원 2인과 지역 단위에서 문화와 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. 고 하였으나, 위원은 문화예술업무담당국장, 부천문화원장,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,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음악감독, PiFan집행위원장, PISAF조직위원장, 부천만화정보센터 상임이사, 복사골예술제대회장, 부천시의회의원 3인과 지역 단위에서 문화와 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. 로 수정(안 제4조제3항)

부천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부천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 제3항중 ‘부천시의회 의원 2인’을 ‘부천시의회 의원 3인’으로 한다.

[수정안 포함]

부천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부천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천시축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고,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축제”라 함은 부천시에서 개최되는 모든 행사의 명칭에 축전·문화제·예술제 및 제(祭) 등 축제적 의미의 명칭을 사용하고, 개최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띠는 경우를 말한다.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

1. 각종 축제의 내용 및 개최 수 조정, 발전에 관한 사항
2. 축제의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
3. 기타 축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

제4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위원은 문화예술업무담당국장, 부천문화원장,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,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음악감독, PiFan집행위원장, PISAF조직위원장, 부천만화정보센터 상임이사, 복사골예술제대회장, 부천시의회의원 3인과 지역 단위에서 문화와 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

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.

제5조(임기)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.

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

제7조(회의)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
②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.

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(간사)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문화예술담당과장이 된다

제9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때
2.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,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
3.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

제10조(사업계획서 심의 및 평가) ①각 축제의 추진주체는 매년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전년도 9월 1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, 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.

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최한 축제는 종료후 30일 이내에 개최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위원회는 축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한 뒤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, 각 축제추진주체는 평가결과 개선·보완 사항에 대하여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④평가방법은 평가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평가항목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현지조사는 평가소위원회 또는 조사용역 등을 통한 별도의 평가자로 할 수 있다.

⑤평가소위원회에서는 축제 등의 결과를 평가하고, 그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다.

제11조(의견청취 등) 위원회는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,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2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